
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석유화학산업의 범위) 법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이란 석유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를 말한다)·천연가스·바이오매스 등과 이를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하여 기초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,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

1.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)

가.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11)

나.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(C20119)

다.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(C20112)

2.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C202)

가. 합성고무 제조업(C20201)

나.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(C20202)

다.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(C20203)

3.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(C20495)

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

제3조(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.

1. 고기능성 화학 원료 및 소재 생산을 위한 고부가 전환 기술
2.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규제 대응 기술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

제4조(고부가 전환) 법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”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.

1. 범용제품 대비 판매단가가 높은 제품의 생산
2. 공급자 대체가 곤란한 제품의 생산
3. 기술 수준의 고도화 및 공정 차별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
4. 원료 전환 및 공정 혁신 등 수익구조 개선
5.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전에 기여
6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인·허가 등의 특례)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대상이 되는 인·허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가.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
나.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판매업 등록 등
2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
나.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

다.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·변경신고 등

3.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

나.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

다.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·제출

라.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

마.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
4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, 영업양도 또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(이하 “합병 등”이라 한다) 및 고부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제1항의 인·허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합병 등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기존 인·허가 등의 효력 인정

2. 인·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의 생략 또는 최소화
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, 환경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치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)

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관련 기준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
3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.

1. 사업재편에 따라 배출시설의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(이 영 시행일 현재 가동을 중지한 배출시설에 한한다)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(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,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방지시설 설치 등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)
2.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경계가 발생하여 허가배출기준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분할되기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을 적용(다만,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분할 이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)
3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재편 승인증서 사본 및 사업재편계획서(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)
2. 규제 특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서
3. 특례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특

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부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
2. 특례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

제7조(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)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검증 및 기술기준 미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기술 또는 신공정의 내용 및 적용 목적
2. 기술기준의 부재 또는 미비 사유
3. 안전성 평가 결과(위험성 평가, 시험·검증 자료를 포함한다)
4. 적용하려는 임시 기술기준 또는 국제기준(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특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부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

2. 특례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(기업결합 심사기간 등)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(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9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포함한다)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(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)은 법 제8조제1항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9조(공동행위 승인의 신청 등)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참가 사업자의 명칭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

2. 공동행위의 개요

가. 공동행위 내용

나. 공동행위 사유

다. 공동행위 기간

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

2. 공동행위 참가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

가.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·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

나.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

- 다.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상황
- 라. 당해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, 수급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상황(최근 1년간은 월별로 구분)
- 마. 당해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
- 바. 당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
- 3.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
- 4.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
 - 가. 참가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의 실시 상황
 - 나. 가목의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
- 5.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
 - 가.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, 기술혁신,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
 - 나.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
- 6.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또는 공동행위에 참가·탈퇴의 제한 여부
- 7.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의 영향
- 8.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경우, 다음 각 호의 서류
 - 가. 당해 업종에서 연구·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
 - 나. 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·기술개발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
 - 다. 당해 연구·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2항의 서류를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 공동행위대표사업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 또는 부실 기재하거나,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요청일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제외한다)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신청의 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등)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(‘정보교환’이라 한다)를 하려는 자는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(별지 제2호 서식) 및 신고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
1. 정보교환 참여 사업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2. 정보교환의 목적
3. 정보교환의 방법
4. 교환되는 정보 목록
5. 정보교환 전담조직, 구성원 및 정보취급자

②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
2. 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, 정보취급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
3. 개별 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익명화, 데이터 통합처리 등을 거칠 것
4. 교환된 정보가 제1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,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, 정보의 흐름을 감독·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
5.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(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정보교환 중단 신고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, 교환된 정보를 지체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

제11조(기술료 감면의 대상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재편 승인기업
2.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대상에 대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 감면의 대상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진법 시행령」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고용 지원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 「고용보험법」, 「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통계의 작성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석유화학산업 품목별 생산·출하·재고·가동률 및 가격 통계
2. 석유화학산업 품목별·국가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통계
3. 석유화학산업 생산액, 부가가치액, 종업원수, 사업체수, 설비투자액 통계
4. 국내외 주요 국가별·제품별 생산능력 및 주요 화학기업 매출액 통계
5. 석유화학기업 정보 및 재무정보 통계
6. 석유화학산업 연구개발인력 현황, 연구개발비, 시설투자비 통계
7. 석유화학산업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업무의 위탁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

2. 법 제16조에 따른 수입동향조사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진흥원
2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법률 제2213909호 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이 영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에 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로서 그 승인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자는 이 영 제5조부터 제7조, 제11조 및 제1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.

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(제9조제1항 관련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 쪽)

신청인 (공동행위 대표사업자)	사업자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(사업장)	전화번호

공동행위 내용 (상세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필요)	☐ 설비 가동률의 조정, 생산량 감축 도는 감산에 관한 협의 ☐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☐ 공급능력 축소 도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,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☐ 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·원료 등의 공동구매 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
--	--

공동행위 사유	
---------	--

공동행위 기간	
---------	--

참가 사업자 현황				
번호	사업자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	주소
1				
2				
3				

본 신청인은 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행위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실시하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.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 · 대차대조표 · 손익계산서 3.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4.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의 손익현황 및 사업자 수 변동상황 5. 당해 상품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생산능력 · 수급현황 · 가격변동상황(최근 1년간을 월별로 구분) 6. 당해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전망 7. 당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8.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입증 자료 9. 참가사업자의 자체적 사업합리화 노력 실시 상황 10. 자체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극복 불가 이유 11. 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· 기술혁신 ·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자료 12.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 · 효율성 증대 효과 비교 자료 13.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또는 공동행위에 참가탈퇴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14. 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향 입증 자료 15.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 가. 당해 업종에서 연구·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. 참여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·기술개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다. 당해 연구·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사유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정보교환 사전신고서 (제10조제1항 관련)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신고인	사업자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(사업장)			
	연락처	전화번호		휴대폰
		팩스번호		이메일

참여 사업자	사업자명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	주소

정보교환 개요	정보교환 개시에정일	
	사업재편계획 승인여부	[] 승인기업(승인일: 년 월 일) [] 미승인기업(사업재편계획제출예정일: 년 월 일)
	정보교환 목적	
	정보교환 방법	※ 별지에 최대한 자세히 기재
	교환되는 정보 목록	
	전담조직 및 구성원	※ 정보교환 담당자 성명, 소속부서, 직책 등 기재

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교환 행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정보교환의 목적, 방법,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(예) 기업 간 비밀유지협정서, 정보교환을 위한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등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정보교환 중단신고서 (제10조제2항 관련)

신고인	사업자명	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
	주소(사업장)		
	연락처	전화번호	휴대폰
		팩스번호	이메일

정보교환중단일	년 월 일
중단사유	
조치계획	※ 정보 폐기 처리계획, 인사조치 계획 등

20 년 월 일 신고한 정보교환을 중단하였으므로 「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

첨부서류	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